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관련 조치사항
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, 제9조
나.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

2.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,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

3.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제한되며,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

4.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다수가 지자체로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받아 시설장을 겸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5. 우리 부에서는 위와 같이 다수의 제공기관이 시설장을 겸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 및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 겸직을 '19. 12. 31.까지 '한시적으로 허용'할 예정이오니,

6. 각 지자체에서는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기관 안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(어르신복지과장), 부산광역시(노인복지과장), 대구광역시(어르신복지과장), 인천광역시(노인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(고령사회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(노인복지과장), 울산광역시(어르신복지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노인장애인과장), 경기도지사(노인복지과장), 강원도지사(경로장애인과장), 충청북도지사(노인장애인과장), 충청남도지사(노인복지과장), 전라북도지사(노인장애인과장), 전라남도지사(노인복지과장), 경상북도지사(노인복지과장), 경상남도지사(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노인장수복지과장), 보건복지상담센터장

보건주사 **조한철** 행정사무관 **김성겸** 과장 **이상희** 전결 2019. 7. 26.

협조자 과장 **박민정**

시행 노인정책과-3664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3461 팩스번호 044-202-3969 / johanchul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